



의 안 번 호	제 105 호
회 의 연 월 일	2023. 9. 18. (제523회 회의)

심 의
결
의
결
사
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기획조정관)
제출연월일	2023. 9. 18.

조직계장,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면서 과학수사관리관을 과학수사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는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 15개 시·도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15명, 경감 51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및 소속기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면서 하부기구 운영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치안정보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예방대응국에 지역경찰운영과 및 지역경찰역량강화과를 신설하며, 생활안전교통국 소속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를 교통기획과로 통합하고, 치안정보국 소속 정보관리과·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 및 정보협력과를 치안정보협력과·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황대응과로 개편하며, 수사국 소속 사이버수사기획과장과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을 사이버범죄수사과장으로 통합하고, 외사국 외사기획정보과를 폐지하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16개 시·도경찰청 소속 생활안전과를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부 소속으로 이관하며, 부산광역시 등 15개 시·도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과를 통합하여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16개 시·도경찰청에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에 청소년보호과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12개 시·도경찰청 소속 수사과와 수사심사담당관을 수사과로 통합하며,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 등 7개 시·도경찰청 소속 형사과와 과학수사과를 형사과로 통합하고,

경상북도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경무기획과와 정보화
장비과를 통합하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개편하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등 6개 시·도경찰청 소속 외사과를 폐지하고,

치안수요 및 업무량에 따른 경찰서 과단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
기 위해 경찰서 과단위를 일괄 정비하며,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하
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 밑에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국
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
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
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해외거점 범죄 및 불법수익 분석 및 대응 업무
3. 한국경찰 연락사무소(코리안데스크) 관련 업무
4.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
5. 재외국민보호 관련 경찰 업무의 총괄·조정
6.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

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상황관리관
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
다.

③ 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지역경찰운영과·지역경찰역
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운영
4. 기동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운영
6. 협력방법에 관한 기획·연구 및 협업
7.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8.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

한 지도·단속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1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2. 지구대·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3. 지구대·파출소의 정원·인사·복무·예산·성과 관련 지원

⑦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의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관리
3.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의 현장 대응 제도·매뉴얼 개선 및 총괄

⑧ 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자치경찰과·청소년보호과

·여성안전기획과·교통기획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
한 사항
9.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6.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7.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⑤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⑥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지침·
시스템 관리·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2.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감독
14.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

개발

⑦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시위 등 교통 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지침·시스템 관리·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즉결심판·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관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공공안전정보국에 치안정보협력과·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황 대응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외사정보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하며, 외사정보 활동을 포함한다)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5.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6. 외사정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外事정보의 분석 및 관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⑦ 치안상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⑧ 삭제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통화·유가증권·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수사국 소관 범죄는 제외한다) 범죄 사건

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사건

마. 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및 정책·수사지침의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사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가. 중·수뢰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라. 건설·환경·의료·보건위생·문화재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⑦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⑧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대응에 관한 연구·기획·집행·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7.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8.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9.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보

10.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수립·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⑪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 제17조(형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

- 수사과·과학수사과 및 범죄분석과를 둔다.
-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 가. 살인·강도·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
 - 나. 폭력 사건
 - 다.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
 - 라. 도박 사건
 - 마. 도주 사건
 - 바. 의료사고·화재사고·안전사고·폭발물사고 사건
 - 사.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⑥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

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소년범죄, 아동학대, 실종 사건

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⑧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연구·개발

⑨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범죄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

3.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4. 주민등록지문 등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안보수사지휘과·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보범죄분석과장”을 “안보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안보수사과장은 간첩·테러·경제안보·첨단안보”를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으로 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조직·기획·예산·감사·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업무
6. 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10. 외사대테러·방첩업무의 지도·조정,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국
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11.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종전의 제8호) 중 “부·소·도서관”을 “처·소·도서관”으로 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2. 조직·법령·성과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교수부)”를 “(교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수
부에 교무과”를 “교무처에 학사교육과·직무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과장”을 “각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무과장”을 “학사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
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 ④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과정 평가
3.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4. 학생·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생 생활지도
5. 교육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급여품, 대여품의 검수·관리 및 후생업무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
실장”을 “홍보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치안정보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황대응과를 둔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분석과장”을 “치안정보분석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업무”를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상황과장”을 “치안상황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5.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40조제3항제8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 수사의 적법·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14.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제40조의2제1항 중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및 마약범죄수사대”를 “반부패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선거

범죄”를 “반부패범죄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로, “부패·공공 범죄”를 “부패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을 “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형사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사무

제41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사보안·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둔다.
- ③ 각 과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및 지하철경찰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④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조정 관련 업무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 ⑤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4. 기동순찰대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업무의 기획·관리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⑥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⑦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청소년보호과·여성안전과·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③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실종·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수사,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 ⑤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⑥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기동경호 계획 수립·운영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제44조제1항 중 “경무기획과·공공안전과·수사”를 “경무기획과·공공안전과·수사과·범죄예방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중 “제57조·제59조 및 제7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7조 및 제59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중 “제63조·제64조 및 제67조”를 “제63조·제64조·제69조의2 및 제70조”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중 “제71조·제72조”를 “제71조의3·제72조”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치안정보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사이버수사과·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청소년보호과·여성안전과 및 교통과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기동

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③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정보과·수사과·형사과·안보수사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⑥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

⑦ 각 과장·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과,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과장은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⑧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의무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 제목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치안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을 “치안정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보업무”를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7.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제9호 및 제10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 및 경상북도”를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로, “제8호 및 제10호”를 “제14호”로, “제외하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를 제외하고,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중전의 제8호) 중 “제62조”를 “제6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16.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를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로,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로,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을 “제주도경찰청”으로,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69조의2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9조”를 “제6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9조의 제목 “(강력범죄수사대)”를 “(마약범죄수사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강력범죄, 폭력범죄, 마약류범죄, 조직범죄”를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형사기동대) 형사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형사기동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사무

3. 제69조에 규정된 사항

제7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사보안·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

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4. 기동순찰대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업무의 기획·관리
6.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8.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감독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제71조의3(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수사·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실종·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수사,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및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

한다.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수사1과·수사2과·형사과·형사1과·형사2과·경비안보과·경비교통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안보과·치안정보과를 둘 수 있고,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3과 같다.

제75조제2항 중 “과장·청문감사인권관·수사심사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으로, “과장·청문감사인권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2”를 “별표 4”로 한다.

제77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3과”를 “별표 5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13”을 “별표 5”로,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를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5와”를 “별표 7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15”를 “별표 7”로, “별표 16과”를 “별표 8과”로, “별표 16의”를 “별표 8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17과”를 “별표 9와”로 한다.

제81조 중 “별표 18”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9장(제8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82조(여성청소년학교폭력대책관) ① 여성청소년학교폭력대책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1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13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5(중전의 별표 13) 중 총계 “1,930”을 “1,82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7”을 “1,117”으로 하며, 치안감 “12”를 “11”로 하고, 경무관 “4”를 “6”으로 하며, 총경 “58”을 “57”로 하고, 경정 “163”을 “153”으로 하며, 경감 “415”를 “385”로 하고, 경위 “340”을 “308”로 하며, 경사 “177”을 “152”로 하고, 경장 “31”을 “30”으로 하며, 순경 “14”를 “12”로 하고, 일반직 계 “709”를 “706”으로 한다.

별표 5(중전의 별표 13)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37”을 “136”으로 하며, 행정서기 “207”을 “206”으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14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6(중전의 별표 14) 중 총계 “2,044”를 “1,94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7”을 “1,117”로 하며, 치안감 “12”를 “11”로 하고, 경무관 “4”를 “6”으로 하며, 총경 “58”을 “57”으로 하고, 경정 “163”을 “153”으로 하며,

경감 “415”를 “385”로 하고, 경위 “340”을 “308”로 하며, 경사 “177”을 “152”로 하고, 경장 “31”을 “30”으로 하며, 순경 “14”를 “12”로 하고, 일반직 계 “823”을 “820”로 한다.

별표 6(중전의 별표 14)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62”를 “161”로 하며, 행정서기 “228”을 “227”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하고, 별표 15를 별표 7로 한다.

별표 7(중전의 별표 15) 중 총계 “134,207”을 “134,309”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25”를 “129,925”으로 하며, 치안감 “18”을 “19”로 하고, 경무관 “76”을 “74”로 하며, 총경 “580”을 “581”로 하고, 경정 “2,915”를 “2,925”로 하며, 경감 “10,488”을 “10,518”로 하고, 경위 “17,065”를 “17,097”로 한다.

별표 7(중전의 별표 15) 중 경사 “28,502”를 “28,527”로 하고, 경장 “31,366”을 “31,367”로 하며, 순경 “38,810”을 “38,812”로 하고, 일반직 계 “4,360”을 “4,362”로 하며, 행정주사보 “368”을 “369”로 하고, 행정서기 “1,170”을 “1,171”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하고, 별표 16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8(중전의 별표 16) 중 총계 “135,154”를 “135,256”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25”를 “129,925”으로 하며, 치안감 “18”을 “19”로 하고, 경무관 “76”을 “74”로 하며, 총경 “580”을 “581”로 하고, 경정 “2,915”를 “2,925”로 하며, 경감 “10,488”을 “10,518”로 하고, 경위 “17,065”를 “17,097”로

한다.

별표 8(중전의 별표 16) 중 경사 “28,502”를 “28,527”로 하고, 경장 “31,366”을 “31,367”로 하며, 순경 “38,810”을 “38,812”로 하고, 일반직 계 “5,307”을 “5,309”로 하며, 행정주사보 “495”를 “496”으로 하고, 행정서기 “1,544”를 “1,545”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하고, 별표 17을 별표 9로 한다.

별표 10을 삭제하고, 별표 18을 별표 10으로 한다.

별표 10(중전의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제74조제1항 관련)

시·도경찰청	경찰서 명칭	하부조직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영등포·서울강남·서울송파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비과·교통과·안보과·치안정보과
경기도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수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안보과·치안정보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노원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비안보과·교통과·치안정보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동대문·서울마포·서울광진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남부·부천원미·시흥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종로·서울용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안보과·치안정보과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관악·서울강서·서울구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비안보과·교통과
부산광역시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청		인천미추홀·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미추홀·인천서부경찰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경기도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비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경기도남부경찰청	김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안보과·교통과·치안정보과
충청남도경찰청	아산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부·서울남대문·서울서대문·서울성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
전라북도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앙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1과·형사2과·경비안보과·교통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동작·서울강동·서울양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수사2과·형사과·경비안보과·교통과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경기도남부	분당경찰서	

경 찰 청		
경 상 북 도 경 찰 청	구미경찰서	
서 울 특 별 시 경 찰 청	서울혜화 · 서울성동 · 서울서부 · 서울강북 · 서울금천 · 서울종암 · 서울방배 · 서울은평경찰서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부산동래 · 부산영도 · 부산동부 · 부산서부 · 부산사상 · 부산금정 · 부산사하 · 부산강서 · 부산북부 · 부산기장경찰서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동부 · 대구남부 · 대구북부 · 대구달서 · 대구성서 · 대구달성 · 대구강북경찰서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인천남동 · 인천논현 · 인천부평 · 인천삼산 · 인천계양경찰서	
광 주 광 역 시 경 찰 청	광주동부 · 광주서부 · 광주남부경찰서	
대 전 광 역 시 경 찰 청	대전중부 · 대전동부 · 대전서부 · 대전대덕경찰서	
울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울산중부 · 울산울주경찰서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안양동안 · 군포 · 부천소사 · 부천오정 · 안산상록 · 오산 · 화성서부 · 용인서부 · 광주 · 하남 · 의왕 · 이천 · 안성경찰서	
경 기 도 북 부 경 찰 청	일산동부 · 일산서부 · 남양주남부 · 남양주북부 · 파주 · 양주 · 동두천 · 구리 · 포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예방 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과 · 형사과 · 경비안보과 · 교통과
강원특별자치도 경 찰 청	춘천 · 강릉 · 원주경찰서	
충 청 북 도 경 찰 청	청주상당 · 청주청원 · 충주경찰서	

충 청 남 도 경 찰 청	천안동남 · 서산경찰서	
전 라 남 도 경 찰 청	목포 · 여수경찰서	
경 상 북 도 경 찰 청	경주 · 포항북부 · 경산 · 안동경찰서	
경 상 남 도 경 찰 청	창원서부 · 마산중부 · 마산동부 · 김해중부 · 김해서부 · 거제 · 진해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경 찰 청	제주동부 · 서귀포경찰서	
서 울 특 별 시 경 찰 청	서울도봉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경무과 · 범죄예방 대응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과 · 형사과 · 경비교통과 · 치안정보안보과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부산중부 · 부산연제경찰서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중부 · 대구서부경찰서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인천중부 · 인천연수경찰서	
대 전 광 역 시 경 찰 청	대전둔산 · 대전유성경찰서	
울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울산동부 · 울산북부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 경 찰 청	세종남부경찰서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수원서부 · 안양만안 · 성남수정 · 성남중원 · 광명 · 화성동탄경찰서	
경 기 도 북 부 경 찰 청	고양경찰서	
충 청 남 도 경 찰 청	천안서북경찰서	

전라북도 경찰청	전주덕진·군산·익산경찰서	
전라남도 경찰청	순천경찰서	
경상북도 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경상남도 경찰청	진주·양산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제주시부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세종북부경찰서	
경기도남부 경찰청	여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 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경 비안보과·교통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동해·태백·속초·삼척경 찰서	
충청북도 경찰청	제천경찰서	
충청남도 경찰청	논산·공주·보령·홍성경 찰서	
전라북도 경찰청	정읍·남원·김제·완주경 찰서	
전라남도 경찰청	광양·고흥·해남·무안경 찰서	
경상북도 경찰청	김천·영주·영천·상주· 문경·칠곡경찰서	
경상남도 경찰청	통영·사천·밀양경찰서	
경기도남부 경찰청	과천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경찰서	

경찰청		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생활안전 교통과·수사과·경비안보과
전라남도 경찰청	나주경찰서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강화경찰서	
경기도남부 경찰청	양평경찰서	
경기도북부 경찰청	가평·연천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영월·정선·홍천·평창· 횡성·고성·인제·철원· 화천·양구경찰서	
충청북도 경찰청	음성·영동·괴산·단양· 보은·옥천·진천경찰서	
충청남도 경찰청	예산·부여·서천·금산· 청양·태안경찰서	
전라북도 경찰청	고창·부안·임실·순창· 진안·장수·무주경찰서	
전라남도 경찰청	장흥·보성·영광·화순· 함평·영암·장성·강진· 담양·곡성·완도·진도· 구례·신안경찰서	
경상북도 경찰청	의성·청도·영덕·울진· 봉화·예천·성주·청송· 영양·군위·고령경찰서	
경상남도 경찰청	거창·합천·창녕·고성· 하동·남해·함양·산청· 함안·의령경찰서	
경상북도 경찰청	울릉경찰서	
경상북도 경찰청	울릉경찰서	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생활안전 교통과·수사과·치안정보안보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81조 관련)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4명 (총경 1명, 경정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생활안전교통국 자치경찰과	3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경무인사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수사기획조정관	1명 (치안감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5)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8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2명 (총경 1명, 경위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 형사국	1명 (치안감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수사인권담당관	6명 (4급 또는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	1명 (총경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0) 미래치안정책국	1명 (치안감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명 (치안감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	1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	(경무관 12명)	
3)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경무관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4)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경무관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5)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1명 (경무관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남·경북·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2명 (총경 12명)	2026년 9월 30일까지
7)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74명 (경정 74명)	2026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90명 (경사 35명, 경장 45명, 순경 1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71명 (경장 146명, 순경 12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명 (경장 1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329명 (경사 159명, 경장 145명, 순경 2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5)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00명 (경위 3명, 경사 49명, 경장 44명, 순경 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4명, 경사 47명, 경장 72명, 순경 3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명 (경위 1명, 경사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사건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15명 (경정 7명, 경감 10명, 경위 40명, 경사 81명, 경장 43명, 순경 3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기록물 업무(시·도경찰청)	76명 (기록연구사 16명, 경사 6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0)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1)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5명 (경위 36명, 경사 61명, 경장 54명, 순경 1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2)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69명 (경사 19명, 경장 31명, 순경 19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6명 (경사 8명, 경장 12명, 순경 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4)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시·도경찰청)	41명 (경사 2명, 경장 28명, 순경 1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5)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35명 (경장 12명, 순경 19명, 6급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6)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40명 (경위 7명, 경사 11명, 경장 7명, 순경 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7)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90명 (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8) 디지털증거분석 업무(시·도경찰청)	43명 (경위 7명, 경사 14명, 경장 21명, 순경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9)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38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0)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25명 (경위 34명, 경사 50명, 경장 91명, 순경 5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1) 국유재산 관리업무(시·도경찰청)	45명 (7급 21명, 8급 2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2)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6명 (경위 1명, 경사 2명, 경장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3)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4) 사이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경감 17명, 경위 16명, 경사 39명, 경장 51명, 순경 4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5) 지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53명 (경사 30명, 경장 2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6)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96명 (경감 114명, 경위 8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7) 강력범죄수사 및 우범지역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69명 (경정 2명, 경감 167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82조제2항 관련)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감사관) ① ~ ⑤ (생략)	제3조(감사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2. (생략) 3.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⑥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의2(치안상황관리관) ① 치안상황관리관 밑에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을 두며, 총경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치안상황관리관을 보좌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관리 4. 지구대·파출소의 정원·인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 밑에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해외거점 범죄 및 불법수익 분석 및 대응 업무 3. 한국경찰 연락사무소(코리안

사·복무·예산·성과 관련 지원 5. 지구대·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6.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데스크) 관련 업무 4.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 5. 재외국민보호 관련 경찰 업무의 총괄·조정 6.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 장비 수출 지원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다. ③ 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지역경찰운영과·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운영 4. 기동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운영 6. 협력방법에 관한 기획·연구 및 협업 7.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8.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
<신 설>			

도·단속

- 10.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 1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 2. 지구대·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 3. 지구대·파출소의 정원·인사·복무·예산·성과 관련 지원

⑦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의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2.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관리
- 3.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의 현장 대응 제도·매뉴얼 개선 및 총괄

⑧ 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과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 2.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 3.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생활안전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8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국장을 보좌한다.

③ 생활안전국에 범죄예방정책과·자치경찰과·아동청소년과 및 여성안전기획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자치경찰과·청소년보호과·여성안전기획과·교통기획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운영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운영 5. 협력방법에 관한 기획·연구 및 협업 6.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6의2.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6의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6의4.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6의5.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 4.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6.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7.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⑤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
--	--	--	--

<u>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⑦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6.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7.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⑧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u>지에 관한 업무</u> 6.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⑥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지침·시스템 관리·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	<u>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u> 4. 스토킹·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u>무</u> 12.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감독 14.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 개발 ⑦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시위 등 교통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지침·시스템 관리·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즉결심판·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관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	--	--	--

제9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
기획과·교통안전과 및 교통운
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 지도
4.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
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
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삭 제>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시위 등 교통
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
개정 및 지침·시스템 관리·
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즉결
심판·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관
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⑤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
구역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지침·시스템 관리·개선
2.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3.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

무

4.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감독

6.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 개발

제11조(공공안전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안전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안전정보심의관으로 하며, 공공안전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안전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안전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공공안전정보국에 정보관리과·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 및 정보협력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공공안전정보국에 치안정보협력과·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황대응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외사정보 업무를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하며, 외사정보 활동을 포함한다)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5.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6.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

는 정보활동 ⑦ 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재난으로 인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⑧ 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3.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	향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外事정보의 분석 및 관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⑦ 치안상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재난으로 인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	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제12조(외사국) ① 외사국에外事기획정보과·인터폴국제공조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외사기획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外事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外事정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外事정보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4.外事대테러·방첩업무의 지도·조정,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다음	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⑧ 삭제 <삭 제>
---	--	--	--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
공조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해외거점 범죄 및 불법수익
분석 및 대응 업무

3. 한국경찰 연락사무소(코리안
데스크) 관련 업무

4.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
교육 및 관리 업무

5.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
된 신원조사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2.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
장비 수출 지원

제14조(과학수사관리관) ① 과학
수사관리관 밑에 과학수사담당
관 및 범죄분석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
다.

③ 과학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

<삭 제>

에 관하여 과학수사관리관을 보
좌한다.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
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연구
· 개발

4. 그 밖에 과학수사관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과학수사관리관을 보
좌한다.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및 지
원

2. 범죄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
리

3.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4. 주민등록지문 등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제16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경제
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및 범
죄정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

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
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
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항을 분장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나. 문서·통화·유가증권·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수사국 소관 범죄는 제외한다) 범죄 사건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사건	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마. 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통화·유가증권·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및 정책·수사지침의 수립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수사국 소관 범죄는 제외한다) 범죄 사건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민원접수·처리	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기업범죄 사건
6.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마. 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6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및 정책·수사지침의 수립
7. 수사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민원접수·처리
8. 그 밖에 수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④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6.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가. 증·수뢰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8. 수사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라. 건설·환경·의료·보건	⑥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u>위생·문화재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u>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⑤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가. 증·수뢰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라. 건설·환경·의료·보건 위생·문화재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u>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u> ⑥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u>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u>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⑦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⑧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	--	---	--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연구·기획·집행·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7.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8.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9.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보

10.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수립·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⑪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7조(형사국) ① 형사국에 강력

제17조(형사국) ① 「경찰청과 그

범죄수사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가. 살인·강도·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 나. 폭력 사건 다.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 라. 도박 사건 마. 도주 사건 바. 의료사고·화재사고·안전사고·폭발물사고 사건 사.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과학수사과 및 범죄분석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가. 살인·강도·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 나. 폭력 사건 다.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 라. 도박 사건 마. 도주 사건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바. 의료사고·화재사고·안전사고·폭발물사고 사건 사.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
--	--	--	--

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 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소년 범죄, 아동학대, 실종 사건 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 인범죄에 대한 통계·기록물관리, 민원 접수·처리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 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 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소년 범죄, 아동학대, 실종 사건 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연구·관리, 정책·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⑧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연구·개발 ⑨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범죄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 3.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4. 주민등록지문 등 지문자료의 수집·관리 <삭 제> 제18조(사이버수사국) ① 사이버 수사국에 사이버수사기획과·사이버범죄수사과·사이버테러 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②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연구·기획·집행·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3.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4. 삭제
 5. 삭제
 6.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

- 보
7.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 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수립·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⑥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9조(안보수사국) ①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안보수사지휘과·안보범죄분석과 및 안보수사과를 둔다.

<신 설>

② (생략)

③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조직·기획·예산·감사·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제19조(안보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안보수사지휘과·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3.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6. 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략)

⑤ 안보범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 (생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안보기획관리과장-----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조직·기획·예산·감사·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6. 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

7. ~ 9.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u>10. 외사대테러·방첩업무의 지도·조정,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u>
<u><신 설></u>	<u>11.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u>
<u><신 설></u>	<u>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⑥ 안보수사과장은 간첩·테러·경제안보·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u>⑦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 -----</u> ----- -----.
제20조(운영지원과) ①·② (생략)	제20조(운영지원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u><신 설></u>	<u>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u>
<u><신 설></u>	<u>2. 조직·법령·성과에 관한 사항</u>
1. ~ 7. (생략)	3. ~ 9.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그 밖에 다른 부·소·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 ----- 처·소·도서관 ----- --
제21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교무	제21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학사

<u>과를 둔다.</u>	<u>교육과·직무교육과-----</u> -----.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각 과장-----.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③ 학사교육과장-----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2. 교과과정의 편성
<u><신 설></u>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3. ~ 6. (생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u>④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과정 평가
	3.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4. 학생·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생 생활지도
	5. 교육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급여품, 대여품의 검수·관리 및 후생업무

제22조(학생지도부)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 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

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

업무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밑에 수사심사담당관 1명을 둔다.

제34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①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삭 제>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

----- 홍

보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로 보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동

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

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조정

에 관한

업무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에

관한 업무

4. 지구대·파출소 상황업무

의

기획·관리

5. 삭제

6. 삭제

제36조(수사심사담당관) ① 수사

심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차장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2.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타당

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3.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5.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제39조(공공안녕정보외사부) ① 공공안녕정보외사부에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생략)

③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 4. (생략)

<신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6. (생략)

④ 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제39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황대응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치안정보분석과장-----
-----.

1.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 제5호까지-----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치안상황대응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

4. 외사대테러·방첩업무

5.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6.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40조(수사부) ①·② (생략)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제40조(수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수사심의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u><신 설></u>	<u>수립, 점검 및 지도</u>
<u><신 설></u>	<u>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u> <u>의 조사·처리</u>
<u><신 설></u>	<u>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u> <u>건의 조사·처리</u>
<u><신 설></u>	<u>14.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u> <u>공조 업무</u>
8. (생 략)	<u>15. (현행 제8호와 같음)</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 사단에 <u>반부패·공공범죄수사</u> <u>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u> <u>수사대 및 마약범죄수사대</u> 를 둔 다.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 ---- <u>반부패범죄수사대·공공</u> <u>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u> <u>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u> <u>은 공무원범죄·선거범죄 등 주</u> <u>요 부패·공공 범죄 사건으로서</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u> <u>수사 사무를 분장한다.</u>	③ <u>반부패범죄수사대장은 공무</u> <u>원범죄</u> ----- -- <u>부패범죄</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u>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강력범</u> <u>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u> <u>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u>	④ <u>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u> <u>죄 등 주요 공공범죄</u> ----- -----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 장한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u>형사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u>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u> <u>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u> <u>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u> <u>및 수사 사무</u> <u>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u> <u>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u> <u>요범죄 사건</u> <u>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u> <u>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u> <u>기획수사 사건</u> <u>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u> <u>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u> <u>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u> <u>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u> <u>필요가 있는 사건</u>
	2. <u>우범지역 범죄예방 순찰에</u> <u>관한 사무</u>
제41조(안보수사부) ①·② (생	제41조(안보수사부) ①·② (현행

략) ③ 안보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④ (생 략) 제42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각 과장 및 지하철경찰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운영 4.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외사보안·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둔다. ③ 각 과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및 지하철경찰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수사,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관한 업무 ⑤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4. 기동순찰대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업무의 기획·관리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⑦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
--	--	--	---

7.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의 예방 및 수사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제43조(교통지도부)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청소년보호과·여성안전과·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1.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3. 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4. 실종·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5.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
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7.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가정폭력 수사·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수사,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기동경호 계획 수립·운영	4.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5.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⑤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u>관한 업무</u> 5. <u>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u> 6. <u>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u> 7. <u>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u> ⑥ <u>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u> 2. <u>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u> 3. <u>기동경호 계획 수립·운영</u> 4. <u>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u>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u>경무기획과·공공안전과·수사과 및 생활안전교통과</u> 를 둔다.	제44조(하부조직) ① ----- ----- ----- <u>경무기획과·공공안전과·수사과·범죄예방대응</u> -----.		
② <u>세종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u>	② <u>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u>		
	<u>을 둔다.</u> ③·④ (생략) 제45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① <u>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u> ② <u>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세종경찰청장을 보좌한다.</u> 제46조(경무기획과) ① <u>경무기획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u> ② (생략) 제47조(공공안전과) ① <u>공공안전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u> ② <u>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제59조 및 제7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u> 제48조(수사과) ① <u>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u> ② <u>수사과장은 제63조·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u> <u><신 설></u>	③·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6조(경무기획과) <u><삭 제></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7조(공공안전과) <u><삭 제></u> ----- 제57조 및 제59조----- ----- --. 제48조(수사과) <u><삭 제></u> ----- 제63조·제64조·제69조의2 및 제70조----- -----.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u>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u>	

	<u>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u>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① <u>생활안전교통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u>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삭제>
② <u>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u>	----- 제71조의3·제72조 -----
제50조(하부조직) ① <u>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공공안녕정보과·외사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u>	제50조(하부조직) ① <u>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치안정보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사이버수사과·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청소년보호과·여성안전과 및 교통과를 둔다.</u>
② <u>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과 및 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사이버수사과·과학수사</u>	② <u>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경</u>

<u>과·광역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우에는 광역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u>	<u>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기동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로 나누어 분장한다.</u>
③ <u>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경상북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속하는 사무를 경무기획과와 정보화장비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경상남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외사</u>	③ <u>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형사과·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광역</u>

과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안전정보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 및 과학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과학수사과 및 광역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과·정보화장비과·공공안전정보과·외사과·수사과·형사과·안보수사과·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시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정보과·수사과·형사과·안보수사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⑥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

⑦ 각 과장·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밑에 수사심사담당관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차장 밑에 둔다.

⑥ 각 과장, 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⑦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의무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다. 다만, 과학수사과장과,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과장은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⑧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의무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제53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동 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4. 지구대·파출소 상황업무의 기획·관리

5. 삭제

6. 삭제

제59조(공공안녕정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 6. (생략)

<신설>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8.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삭제>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

-----.

1.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

2. ~ 6. (현행과 같음)

7.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 제7호까지-----

<삭제>

및 지도

9.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

11. 외사대테러·방첩 업무

1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13.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60조(공공안녕정보과) 공공안녕정보과장은 제5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61조(외사과) 외사과장은 제59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62조(수사심사담당관) 수사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2.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5.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제9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를 제외하고,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한다.

제63조(수사과) -----
----- . -----

----- 제14호 및 제15호-----
-----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
----- 제14호-----
----- 제외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제62조에 규정된 사항

9. (생략)

1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

1. ~ 7. (현행과 같음)

8. 수사심의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4. 제65조-----
--

15.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16.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제64조(형사과) -----
-----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

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제3호 ----- ----- ----- 제주도경찰청 ----- ----- ----- ----- 제69조의2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9조에 규정된 사항	3. 제66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삭 제>
제67조(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장은 제68조 및 제6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69조(강력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강력범죄, 폭력범죄, 마약류범죄, 조직범죄,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69조(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형사기동대) 형사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형사기동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사무
	3. 제69조에 규정된 사항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0조(안보수사과)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의사보안·외사대테러 및 외 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u>
<u>제71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 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u>
<u>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 획의 수립</u>	<u>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 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u>
<u>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u>	<u>의2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u>
<u>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 찰에 관한 기획·운영</u>	<u>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 획의 수립</u>
<u>4.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u>	<u>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 찰에 관한 기획·운영</u>
<u>5.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u>	<u>3.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u>
<u>사범에 관한 지도·단속</u>	<u>4. 기동순찰대 운영·관리</u>
<u>6.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 감독</u>	<u>5. 지구대·파출소 업무의 기획 ·관리</u>
<u>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 가 및 단속</u>	<u>6.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u>
<u>8.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u>	<u>7.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u>
	<u>사범에 관한 지도·단속</u>
	<u>8.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 감독</u>
	<u>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 가 및 단속</u>
	<u>10.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u>

<u><신 설></u>	<u>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u>
	<u>1. 112신고 접수·지령 및 초동 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 황의 관리</u>
	<u>2. 112제도 기획·조정 에 관한 업무</u>
	<u>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u>
<u><신 설></u>	<u>제71조의3(청소년보호과) 청소년 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u>
	<u>다.</u>
	<u>1.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u>
	<u>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 ·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u>
	<u>3. 아동학대 수사·예방 및 피 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u>
	<u>4. 실종·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u>
	<u>5.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 안전정책에 관한 업무</u>

제72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수사,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 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7.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신 설>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제72조(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수사,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및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인권관·112치안종합상황실 및 5과(경무과·정보안보외사과·수사과·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정보안보외사과를 갈음하여 공공안전정보외사과와 안보과를 두고, 별표 4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며, 별표 5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형사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고, 별표 5의2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1과·수사2과·형사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며, 별표 5의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형사1과·형사2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고, 별표 5의4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1과·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며, 별표 6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며, 별표 7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경비과 및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수사1과·수사2과·형사과·형사1과·형사2과·경비안보과·경비교통과·경비과·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안보과·치안정보과를 둘 수 있고,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3과 같다.

교통과를 두고, 별표 8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를 두며, 별표 9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고, 별표 10의 경찰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를 두며, 별표 11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경무과를 갈음하여 경무과를 둔다.

② (생략)

③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 치안상황관리 및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수사심사관은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심사 및 점검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생략)

제75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생략)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청문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장 및 청문

감사인권관·수사심사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청문감사인권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의 정원 중 114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

③ ----- 별표 4-----.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별표 5와 ----- 별표 5-----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

명, 행정주사 15명, 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22명, 전산주사보 2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26명, 전산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2명, 행정서기보 25명, 전산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사 3명, 기록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2명,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947명(행정주사 38명, 행정주사보 116명, 공업주사보 36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간호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3명, 행정서기 395명, 공업서기 2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8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58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8명, 공업연구관 1명, 공업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
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신 설>

<신 설>

[illegible]

② -----
----- 별표 9와 -----.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 별표 10-----.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82조(여성청소년학교폭력대책
관) 여성청소년학교폭력대책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
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구정원대비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930</u>	<u>1,827</u>	-103
경찰공무원 계	<u>1,217</u>	<u>1,117</u>	-100
·	·	·	
·	·	·	
치안감	<u>12</u>	<u>11</u>	-1
경무관	<u>4</u>	<u>6</u>	+2
총경	<u>58</u>	<u>57</u>	-1
경정	<u>163</u>	<u>153</u>	-10
경감	<u>415</u>	<u>385</u>	-30
경위	<u>340</u>	<u>308</u>	-32
경사	<u>177</u>	<u>152</u>	-25
경장	<u>31</u>	<u>30</u>	-1
순경	<u>14</u>	<u>12</u>	-2
일반직 계	<u>709</u>	<u>706</u>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1</u>	<삭 제>	-1
·	·	·	

·	·	·	
행정주사보	<u>137</u>	<u>136</u>	-1
·	·	·	
·	·	·	
행정서기	<u>207</u>	<u>206</u>	-1
·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44</u>	<u>1,941</u>	-103
경찰공무원 계	<u>1,217</u>	<u>1,117</u>	-100
·	·	·	
·	·	·	
치안감	<u>12</u>	<u>11</u>	-1
경무관	<u>4</u>	<u>6</u>	+2
총경	<u>58</u>	<u>57</u>	-1
경정	<u>163</u>	<u>153</u>	-10
경감	<u>415</u>	<u>385</u>	-30
경위	<u>340</u>	<u>308</u>	-32
경사	<u>177</u>	<u>152</u>	-25
경장	<u>31</u>	<u>30</u>	-1
순경	<u>14</u>	<u>12</u>	-2
일반직 계	<u>823</u>	<u>820</u>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1</u>	<삭 제>	-1
·	·	·	
·	·	·	

행정주사보	<u>162</u>	<u>161</u>	-1
•	•	•	
•	•	•	
행정서기	<u>228</u>	<u>227</u>	-1
•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207</u>	<u>134,309</u>	+102
경찰공무원 계	<u>129,825</u>	<u>129,925</u>	+100
•	•	•	
치안감	<u>18</u>	<u>19</u>	+1
경무관	<u>76</u>	<u>74</u>	-2
총경	<u>580</u>	<u>581</u>	+1
경정	<u>2,915</u>	<u>2,925</u>	+10
경감	<u>10,488</u>	<u>10,518</u>	+30
경위	<u>17,065</u>	<u>17,097</u>	+32
경사	<u>28,502</u>	<u>28,527</u>	+25
경장	<u>31,366</u>	<u>31,367</u>	+1
순경	<u>38,810</u>	<u>38,812</u>	+2
•	•	•	
•	•	•	
일반직 계	<u>4,360</u>	<u>4,362</u>	+2
•	•	•	
•	•	•	
행정주사보	<u>368</u>	<u>369</u>	+1

	.	.	.	
	.	.	.	
행정서기	<u>1,170</u>	<u>1,171</u>		+1
	.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5,154	135,257	+102
경찰공무원 계	129,825	129,925	+100
·	·	·	
치안감	18	19	+1
경무관	76	74	-2
총경	580	581	+1
경정	2,915	2,925	+10
경감	10,488	10,518	+30
경위	17,065	17,097	+32
경사	28,502	28,527	+25
경장	31,366	31,367	+1
순경	38,810	38,812	+2
·	·	·	
·	·	·	
일반직 계	5,307	5,309	+2
·	·	·	
·	·	·	
행정주사보	495	496	+1

	•	•	•	
	•	•	•	
행정서기		<u>1,544</u>	<u>1,545</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